

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3. 5. 21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3년 5월 17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5월 1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4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3. 5. 21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시민과장 이태경)

가. 제안이유

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 제13390호 '91. 6. 19) 및 동시행규칙(총리령 제395호 '91. 9. 30)의 공포시행과 지방재정법의 개정(법률 제4466호 '91. 12. 31)에 따라 사하구공인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 중 “출장소(장)”를 삭제함.
- 조례 제4조 중 “관인규정(대통령령 제4772호)”을 “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 제13390호)”으로 함.
- 조례 제5조 중 “전도자금 출납원”을 “일상경비 출납원”으로 함.
- 공인규격, 공인신조(개각)신청서, 공인대장 등 서식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사하구 공인조례는 1988. 5. 1 조례 제14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세차례 개정 시행되어 왔으나 지방재정법 개정 및 정부 사무관리 규정 등의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조례 일부의 용어가 상위

법규에 어긋나므로 이를 고쳐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 (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)